

제38조(계약에 관한 사항)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(보호자),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.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기간 :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서비스 계약 시작일 부터 인정서 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 :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3. 이용비용 본인부담금

- 1)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(주간보호)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%를 받고, 나머지 85%는 공단에 청구한다.
- 2)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% 청구하고,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을 차등적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비율로 납부한다.

구 분	공단부담금	본인부담금요율
기초생활수급자	100%	0%
보험료순위0~25%이하	94%	6%
보험료순위25%초과~50%이하	91%	9%
보험료순위 50%초과(일반)	85%	15%

- 3)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료비용으로 납부한다.
- 4)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%의 할증비용을 납부한다.
- 5)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납부한다. 단, 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- 6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%를 유료비용 납부한다.

7)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: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④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5. 서비스 이용시 구비서류 :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- 1) 장기요양인정서 1부.
- 2)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.
- 3) 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 의뢰서 1부.(해당자)
- 4) 투약의뢰서 - 처방전(투약 의뢰자)
- 5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
- 6) 응급처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망
- 7) 차량이용동의서
- 8) 기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

6. 계약의 해제 : 다음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(추가)

1) 이용자의 계약해지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(보호자)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했

을 경우

2) 기관의 계약해지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③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